

2256

PR 0 0

자 통 계	시 방 행 정 청 사 기 안 처	계 획 과 장 유 병 은	전 화 번 호 3 6 1	근 거 서 류 점 수 일 자
운 영 계 획 부 서	계 획 과 장	도 시 계 획 과 장	부 서 장	시 장
관 계 관 서 명	시 정 과 장 홍 부 과 장 건 축 과 장	내 부 주 2		
기 안 년 월 일	1963. 9. 17	시 행 년 월 일	1963. 9. 25	보 존 년 한
분 류 기 호	415	전 체 통 계	중 결	정 서 기 장
경 수 참 유 선 조			발 신	
제 목	건축선 지검			
<p>종로구 내무동 110의 9호 회창유로 부러 출원 한 동지번에 건축선 지검이 있어 현장조사 하온바 별지 북명서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시행코저 합니 다</p> <p>안 1.</p> <p>서울특별시 고시 제 987호 건축법 제 3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다음과 같이 지검 <del>한다</del></p> <p>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과 및 관할 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종람한다</p> <p>1963. 9. 25.</p>				

서울특별시청 윤 태 알

종 목	위	치	각 원	변 장	비 고
건축선	종로구. 내우동 110의 9		3.0㎡	27.0㎡	

끝

안 2

수도제인가제 6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우동 110의 9  
 회항규

1963. 9. 14자로 귀하가 출원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우동 110의 9내 건축선 지정 신청에 관하여 별첨 고시문과 같이 지정함

1963. 9. 25.

서울특별시청 윤 태 알

유형 신청서. 고시문 각 1부 끝

안 3

수신	종로구 회항	발신	의정부 무라
제 목	건축선 지정		

종로구 내우동 110의 9호 회항규 출원에 의하여 동리번내에 별첨 고시문 및 도면과 같이 건축선을 지정

하였으니 <sup>사무처장이 편지 보내기 싫었기에</sup> 일반에게 <sup>종람할 것</sup>

유형 고시분. 도면 각 1부 끝

안 4

우신 | 공보실 강 | 발신 | 도시계획국장

레독 | 건축년 지정

별첨과 같이 고시 하였으니 시보에 게재 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유형 고시분 1부 끝

# 복 명 서

명예 의하여 시내 종로구 내수동 110의 9번지내 ~~현상~~  
건축선 지정에 대한 편장을 조사한바 다음과 같  
이 복명 합니다.

1963. 9. 17

등록기사 유병은 

서울특별시강 제하

1. 강 소 종로구 내수동 110의 9번지
2. 소 취권 본인 소유 토지
3. 현 강 신청대지가 626평이나 건물은 1동에

불과 하며 고지대로서 건축에 적합함

4. 건축선의 폭 및 연강  $B=3.0^m$   $L=27^m$
5. 도로의 연결 현재도로(지적상도로)  $B=6.0^m$ 에

연결 됨

6. 배 우 현 도로의 앞쪽에 연결됨
7. 의 견 건축선 지정하여도 거강 없다고  
사료됨 끝

간행권

건축선지정원정서

서기 1963년 9월 11일  
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수동 110번지 9호  
성명 **崔昌圭**

서울특별시장 귀하

건축매지 조성이 위하여 하기 위치의 건축선 지정코저 관계로서 첨  
부하여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심을 바랍니다.

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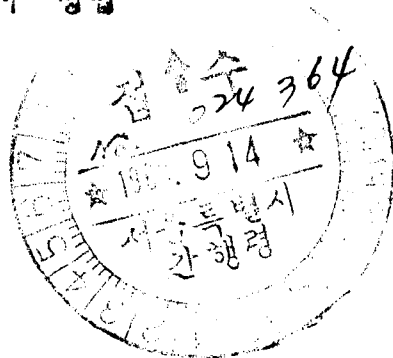
매지 위치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수동 110번지 9호

건축선위 위치 및 가격금 연장

위 지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수동 110번지 9호

건축선위 위치 표시 방법

- 가. 토지환성
- 나. 측구축조
- 다. 하수관매설



세측 제 18 조에 의한 호관 매설



No. 6282 의 / 호

### 시세 완납 증명서

주소 또는  
거 소 서울특별시 ~~중구~~ ~~구~~ ~~동~~ 가 110 번지

영업장소 서울특별시 ~~구~~ ~~동~~ 가 번지

상호 또는  
업 종 ~~명~~ 최 창 주

위에 적은과는 서기 1963년 10 월 10 일 현재로 채납이  
없음을 증명함

서기 1963년 10 월 10

구청장

645

종로구청장 김  
서울특별시 구청장



424

18827

未

<p>未課稅證明願 光化門稅務署長 貴下 No. _____</p>		<p>表記事實을 確認한바 相違없음은 證明함 西紀一九六三年 月 日 光化門 稅務署長</p> <p>의 증명함 서기 1963년 9월 10일 광화문세무서장 장재식</p>
納稅者의 住所	光化門路區內 帶洞 110~9	
商號及姓名	崔昌圭	
營業場所		
營業種目		
證明書使用目的	許可用	
提出處	光化門特別市	<p>이 증명서의 有効期間은 年 月 日 까지임. 有效期間의 計算法은 發給하는 날이 끝난 부터 計算하여 三十一일까지는 12時 까지임.</p>
證明書의 檢査	感通	
<p>國稅徵收法 施行令 第十五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給하는 生理在 課稅實績의 狀을 證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西紀一九六三年 九月十日 申請者 崔昌圭</p>		

8183